

근로자를 위한

사업장 결핵관리

목 차

1

직장내 결핵관리의 필요성

2

결핵검진 관리

3

결핵환자 관리

4

결핵 바로 알고 잘 대처하기!

제 1 장

직장내 결핵관리의 필요성

1. 결핵관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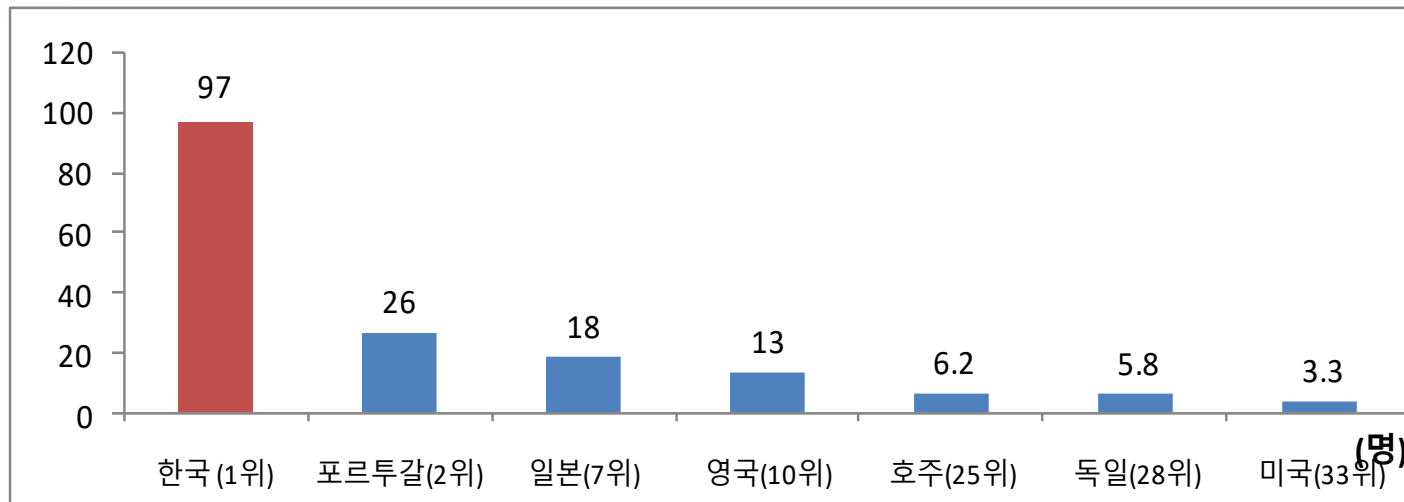
● 대안민국 결핵 관리의 연주소

☞ 결핵발생률 OECD 국가 1위

- 높은 경제·의료수준에도 불구하고, 후진국형 감염질환인 결핵관련 지표는 OECCE 국가 중 1위를 유지(2013년)

♣ 2위 포르투갈 26명, 7위 일본 18명, 33위 미국 3.3명

☞ 국내사망자수 2,346명(2012년)



♣ '13년 OECD 주요국 결핵발생률(인구10만명당), 2014년 WHO통계

1. 결핵관리의 필요성

● 국내 높은 질병부담 및 사회·경제적 손실

☞ 생산연령층인 20~50대가 56%(13년 20,119명)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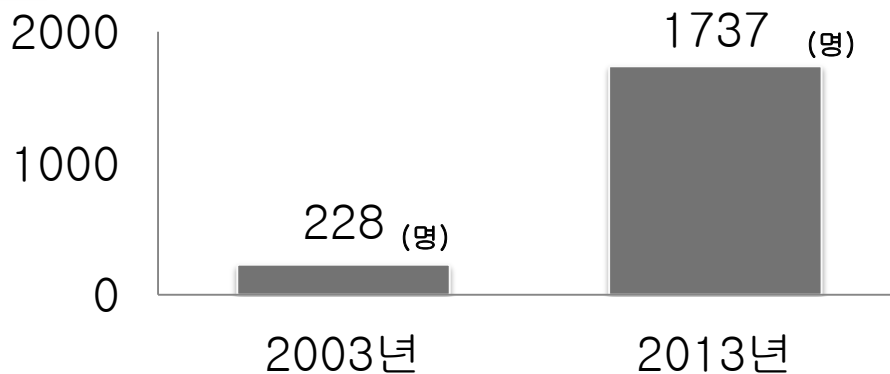
- 법정 감염병(75종) 중 발생('13년 36,089명)·사망('12년 2,346명)
1위로 많은 질병부담 초래

- 사업장, 군부대 등 집단시설¹의 결핵 발생 지속으로 국민 불안감 고조

☞ 관리 곤란 결핵 환자군의 지속적 증가

- 1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제내성² 환자 연간 1천여명 발생

- 동남아시아 등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환자 증가



* 외국인 결핵환자

'03년 228명→'13년 1,737명(10년간 7.5배 증가)
(10년간 7.5배 증가)

¹ 3,265개 시설(학교 등 1,953개, 직장 643개, 군부대 305개, 교정·복지시설 287개 등)에서 결핵환자 발생('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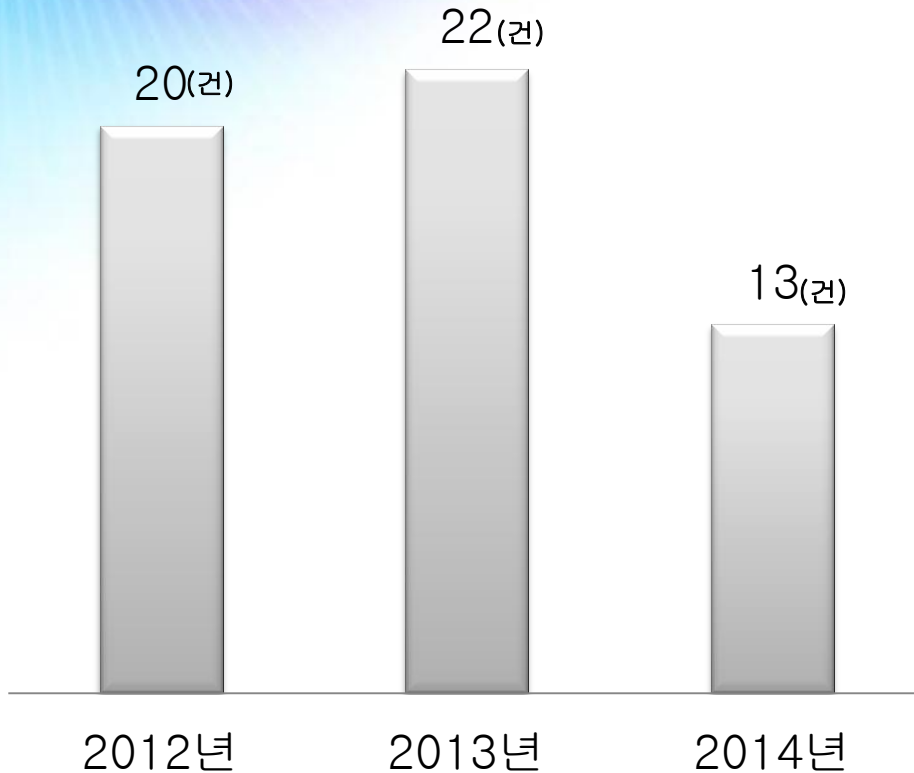
² 다제내성결핵이란? 처방가능한 거의 모든 항결핵약에 내성이 생긴 상태

1. 결핵관리의 필요성

● 업무상 질병 중 **결핵**으로 인한 산업폐해 현황

(질병코드: 세균, 바이러스)

■ 2012년~2014년 발생한 결핵산재건수



(요양승인일 기준)

'12년~'14년 지역별 결핵산재현황

지역별	명(수)
강원	6
경기	4
경남	2
경북	1
광주	2
대구	2
대전	1
부산	5
서울	21
울산	1
인천	2
전남	1
전북	3
제주	1
충남	1
충북	2

(요양승인일 기준)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폐해통계

1. 결핵관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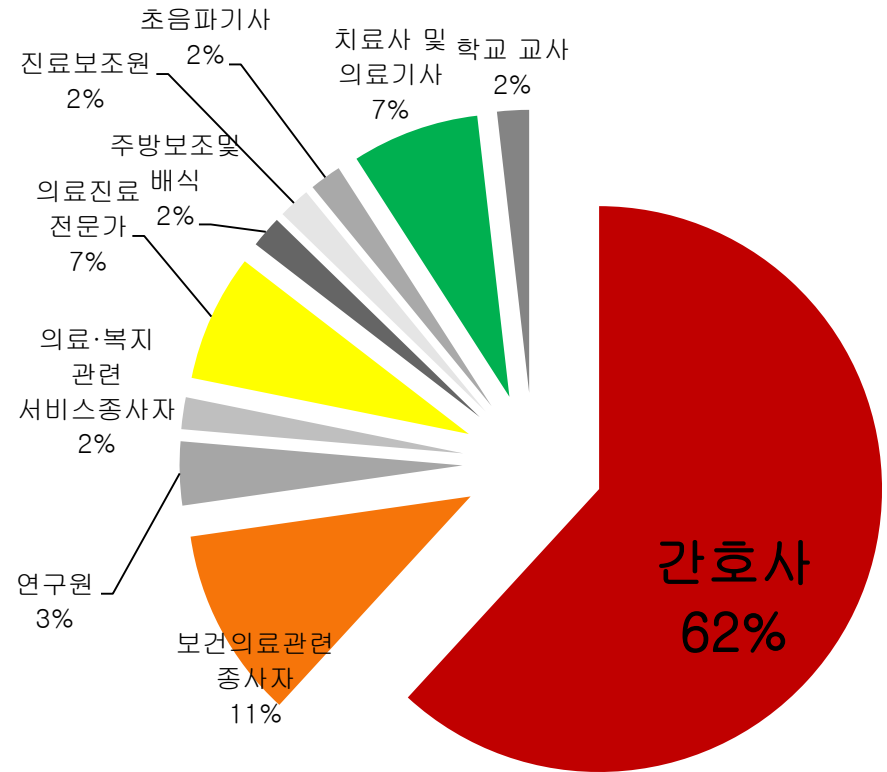
의료기관 종사자의 건강한 노동력 확보 필요

직종별 결핵산재 발생 중 **간호사가 전체 직종의 62% 차지**

사업장 분류 및 직종별	명(수)
노인요양복지시설	1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종사자	1
병의원	52
간호사	34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진단검사의학과1,영상의학과1, 그 외4)	6
치료사 및 의료기사 (임상병리사3, 운동치료사1)	4
의료진료 전문가 (의사4)	4
주방 보조 및 배식	1
진료보조원	1
초음파기사	1
연구원	1
학교	1
학교 교사	1
협회및 단체	1
연구원	1

(2012~2014년 요양송인일 기준)

직종별 결핵산재승인현황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통계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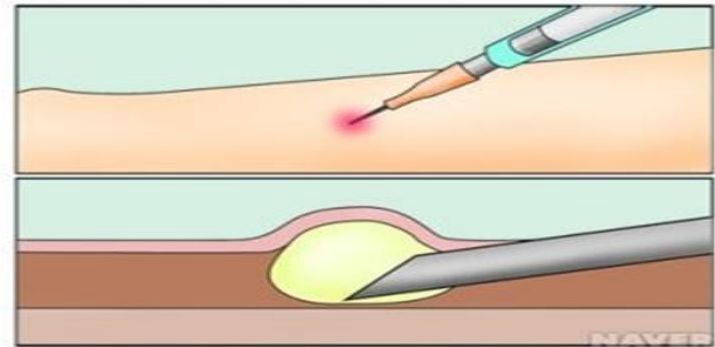
결핵검진 관리

2. 결핵 검진 관리

● 결핵완자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 결핵검진 세부사항

- 검사대상: 모든 사업장 종사자
- 검사방법: 건강검진(흉부X선 검사 등)
 - 결핵검진 : 흉부 X선 검사 실시
 - ※ 흉부 X선 결과 결핵의심 및 유소견자의 경우에는 추가검사(객담검사) 실시
 - 잠복결핵검진
 - ①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 ②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



결핵 -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

※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사 및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중 결핵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은 결핵검진 외 잠복결핵검진 추가 실시

2. 결핵 검진 관리

● 사업장 종사자를 결핵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 결핵검진 세부사항

- 검사주기 : 사무직 근로자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 연 1회 이상

※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며,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결핵예방법에 의한 결핵검사로 간주함

• 검진후 조치

- 결핵환자로 진단될 경우 관할 보건소 신고
- 특히 전염성환자의 경우에는 업무중사 일시제한 실시, 필요시 사업장 접촉자 검진 시행

제 3 장

결핵환자 관리

3. 결핵 환자 관리

● 결핵환자의 국가지원

- ▶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등을 위하여 결핵치료비를 국가가 지원
 - 결핵확진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 가능하며, **본인부담금 10%중 1/2 지원**
 - 보건소 결핵관리요원 및 민간공공협력의료기관(117개소*)의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통하여 **환자의 완치시 까지** 상담 및 복약관리를 시행함

*민간공공협력사업 참여의료기관117개소 및 · 공립의료기관 *

*서울 : 가톨릭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31개소

부산 : 고신대복음병원, 대동병원 등 10개소

대구 : 경북대병원, 계명대병원 등 8개소

인천 : 가천의대 길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등 6개소

광주 : 광주기독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3개소

대전 : 가톨릭대병원, 건강대병원, 을지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4개소

울산 : 동강병원, 울산대병원, 혜명심지의료재단울산병원 등 3개소

경기 : 가톨릭대병원, 고려대병원 등 21개소

강원 : 강릉아산병원, 강원대병원, 연세대의대 원주기독병원, 춘천성심병원 등 4개소

충북 : 청주성모병원, 충북대병원, 한마음재단하나병원 등 3개소

충남 : 단국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2개소

전북 : 원광대병원, 익산병원, 전북대병원 등 5개소

전남 : 국립목표병원, 목포중앙병원, 목포한국병원 등 5개소

경북 : 구미차병원, 동국대 경주병원, 안동병원 등 8개소

경남 : 경상대병원, 국립마산병원 등 5개소

제주 : 제주대병원, 한라병원 등 2개소

3. 결핵 환자 관리

● 결핵환자 발생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전염성 결핵환자 업무종사 일시 제한

- 전염성 결핵환자¹는 전염성 소실시까지 자가 격리 등 업무종사 일시 제한
 - 비전염성 결핵 환자의 업무 종사 일시 제한은 불필요하나, 전염성 결핵 또는 폐결핵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찰 필요
- 특히,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에 해당하는 직업 종사자는 업무종사 일시 제한 위반시 같은 법 제33조제1호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사업주는 전염성 소실 판정시 종전 업무에 복귀
 - 위반시 결핵예방법 제3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¹ 전염성 결핵환자란?

- 결핵환자중 객담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

3. 결핵 환자 관리

● 결핵은 주변 사람의 전염예방이 중요합니다

☞ 결핵의 전파경로 : 호흡기

☞ 결핵 전파예방을 위해

결핵환자의 밀접 접촉자의 결핵 및 잠복 결핵감염 검진 필요

- 결핵환자의 **전염성 기간(최장 3개월)**에 동일 실내공간에서 함께 일한 **동료, 가족, 동거인**이 환자의 기침에 포함된 결핵균에 의한 전염 가능성 높음

3. 결핵 환자 관리

● 결핵은 주변 사람의 전염예방이 중요합니다

☞ 결핵환자 발생시

- 관리인, 대표주 또는 경영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에게 신고

- 결핵환자의 접촉자로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 또는 **‘접촉자 검진 쿠폰’** 을 지참하고

민간공공협력사업 참여 기관(117개소)에서

무료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가능

※ 밀접접촉자가 20명 이상이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접촉강도와 사업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접촉자 범위를 다시 설정하고, 단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실시 예정임

3. 결핵 환자 관리

● 대표사 또는 경영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전염성 결핵환자 발생로 인해,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보건소가 사업장 역학조사 시행시

- 사업장은 역학조사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협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벌칙)제5호에 따라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협조사항

- 환자의 밀접접촉자 명단 작성후 보건소로 제공

- 밀접접촉자가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을 받고 필요 시 치료

제 4 장

결핵바로알고 대처하기!



4. 결핵 바로 알고 잘 대처하기!

● 검사대상자 및 방법

- ☞ 의료기관 종사자는 연 1회 결핵검사(흉부X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등 감염우려가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는 연 1회 잠복결핵감염 검사(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또는 인터페론 감마 분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다음의 잠복결핵감염자는 결핵진료지침에 따라 예방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최근 2년내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 음성에서 양성으로 전환된 경우
 - 과거 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흉부 X선 검사에서 관찰되는 경우
- ※ 흉부 X선 검사소견에서 과거에 결핵 치료력이 없이 자연치유된 결핵 병변이 있는 경우 결핵발병의 상대위험도가 6-19배로 높음(결핵진료지침, 2014)
- ☞ 전염성 결핵환자는 전염성이 소실 될 때까지 업무를 제한해야 합니다.

4. 결핵 바로 알고 잘 대처하기!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예방 수칙

- ▶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검사를 꼭 받으세요.
- ▶ 의료현장에서는 손 씻기와 기침예절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 결핵예방을 위한 5가지 생활 수칙을 지켜주세요.



4. 결핵 바로 알고 잘 대처하기!

● 결핵이란?

☞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 **다른 신체부위**에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결핵감염 경로란?

☞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결핵균에 감염됩니다.

- 결핵은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므로, 환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타액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4. 결핵 바로 알고 잘 대처하기!

● 결핵 증상과 치료

♣ 주요증상 :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감소 등

☞ 치료

-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며, 치료 시작 후 약 2주가 경과하면 전염성이 소실됩니다.

● 결핵 진단방법

① 흉부 X선 검사 : 흉부 X선 검사에서 결핵이 의심 시 결핵 확진을 위해 객담검사를 실시.결핵 진단에 유용하지만, 단독으로 결핵을 진단하지는 않음

②가래(객담)검사 : 객담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면 결핵으로 진단

4. 결핵 바로 알고 잘 대처하기!

● 결핵관련 Q&A

Q: 직장건강검진에서 흉부 X선 검사를 하였는데, 결핵검사를 위한 흉부 X선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당해 연도에 직장건강검진에 의한 흉부 X선 검사를 받았다면 동일 연도에는 결핵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직장건강검진)의 흉부 X선 검사 결과로 대체가능합니다. 다만, 잠복결핵감염검사는 일반건강검진(직장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4. 결핵 바로 알고 잘 대처하기!

● 결핵관련 Q&A

Q: 검사결과 비활동성 결핵인 경우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A: 비활동성 결핵의 소견은 활동성 결핵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필요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치료력이 없다면 결핵진료지침에 따른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권고합니다.

4. 결핵 바로 알고 잘 대처하기!

● 결핵관련 Q&A

Q: 활동성 호흡기결핵으로 판정된 경우 언제 업무복귀가 가능한가요?
혹은 검사결과 비활동성 결핵인 경우에 업무를 제한해야 하나요?

A: 활동성 호흡기 결핵환자는 결핵예방법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전염성이 소실시까지 업무종사를 제한합니다. 비활동성 결핵의 경우 전염성이 없으므로 별도의 업무종사 제한은 불필요합니다.